

1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관련 예산전용

□ 사업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)
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 관련 예산 전용 계획 (시민건강국, '22.1.5.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2.1.13. ~ '22.2.11.
- 사업내용 : 찾아가는 결핵검진 체계를 활용한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
- 소요예산 : 69,810천원(전액 시비)

□ 예산전용 사유

- 재택치료자 중 '유증상자'를 위한 대면진료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개소 및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, '무증상자'의 비대면진료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흉부 X-선 재택방문 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수행 체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예산전용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함

□ 예산전용 내역('22.1.6.)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현액	변경요구액		변경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생활보건 관리 향상	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	신종감염병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	재료비 (206)	재료비(01)	2,250,000	-	69,810	2,180,190
	생활 보건 예방 관리	결핵 관리 - 보건소 결핵 관리(자체)	민간이전 (307)	민간경상사업 보조(02)	80,000	69,810	-	149,810

작성 자 : 감염병관리과장: 송은철 ☎2133-7660 방역관리팀장: 전병학 ☎7887 담당: 정나영 ☎7270